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

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
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.

※사업주와 근로자는 확정기여형, 확정급여형,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 **선택 가능**

1.사업주 재정지원

최저임금의 120%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%를 지원합니다.(3년간)

※ '22년의 경우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

2.업계 최저 수수료

0.2% 이하의 업계 최저 수수료를 책정, 사업주의 부담을 낮추었습니다.

※ ○○은행 0.35% / 누적 금액, 평잔 금액으로 수수료 산정하기에 매년 수수료 부담금 증가함

3.쉽고 간편한 가입절차

복잡한 절차(규약, 운용 및 자산관리계약서 등)가 표준계약서 하나로 해결됩니다.

4.공적 기금형 퇴직급여제도

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내 유일하게 운영하기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.

5.안정적인 수익률 추구

공동 조성된 기금을 바탕으로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익률을 관리 합니다.

이벤트 실시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연말까지 가입 시

- 가입 근로자 전원 스타벅스 커피 쿠폰(5,000원) 지급
- 사업주 500명 대상 경품 이벤트(공기청정기, 갤럭시 워치 등) 실시
- ※ 제세공과금은 이벤트 당첨자 부담

문의처

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44-0083, 1661-0075

※ 타 퇴직연금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(푸른씨앗)으로 계약이전 가능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부담금 지원

지원대상

● 대상사업
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인 이하 사업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
-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

● 가입자 요건

-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한 근로자
-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
-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지원 요건(최저임금 120% 미만)에 충족할 것(2022년의 경우, 230만원 미만)

지원수준 및 한도

-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%(분기별 지급)
- (2022년)가입자 1명당 연간 23만원 한도(일할), 사업장별 최대 30명

지원기간

-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
- ※ 2022년에 한하여,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일('22.4.14.)부터 3년간 지원 가능
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절차

사업장(사용자부담금계정)

▶ 1단계 : 제도도입 동의

사용자와 근로자가
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동의
(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과반수 동의)



▶ 2단계 : 신청서 제출

가입신청서 제출
(표준계약서 동의 및 가입자등록)



▶ 3단계 : 부담금 납입

정해진 납입 기한에 납입
(연간임금총액의 1/12)



표준계약서 동의절차

-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 동의 필요(공단 제출)
- 근로자대표의 동의 방법
 - 근로자 과반수 구성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: 당해 노동조합의 동의
 - 근로자 과반수 구성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: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

근로자(가입자부담금계정)

▶ 1단계 : 신청서 제출(근로자 ↔ 공단)

가입신청서 제출
(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추가부담금
납부여부 등)



▶ 2단계 : 부담금 납입(근로자 ↔ 공단)

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로 가입자추가
부담금 납입 가능

